

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사례

1 금품 등 제공·수수 관련

재단 행동강령 제26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

① 임직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·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
1. 사건·민원 등 당사자의 현금·선물 제공

- ① 고소인이 고소사건 조사 예정일 전날에 자신의 지인으로 하여금 경찰서 주차장에서 **담당수사관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**하도록 하였고, 수사관은 제공자에 떡을 반환
☞ 제공자에 과태료 9만원
- ② 사건 피의자가 조사가 끝난 후 **담당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100만원**을 수사관의 책상에 놓고 자리를 이탈, 담당수사관은 금품을 제공자에게 반환
☞ 제공자에 과태료 300만원
- ③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조사가 끝난 후 사무실을 나올 때 **1만원을 바닥에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담당수사관에게 제공**, 담당수사관은 금품을 제공자에게 반환
☞ 제공자에 과태료 2만원
- ④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행정기관 담당자들이 진행중인 사건의 답변서 제출을 위해 **심판 담당자를 방문면담하면서 1만 8천원 상당의 음료수 1 박스를 제공**, 심판 담당자는 소속기관장에 음료수를 인도
☞ 제공자 2인에 과태료 각 2만2천원

- ⑤ 물품제조업체 직원이 물품 직접생산여부를 조사 중이던 담당 공직자에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서 **소포상자에 9,600원 상당 과자류를 함께 넣어 담당 공직자에게 송부**, 담당 공직자는 과자류 반환
☞ 제공자에 과태료 2만원, 제공자 소속 법인에 과태료 2만8천원
- ⑥ 사건 피의자의 동거인이 사건 **담당수사관에게 2,000만원을 제공**, 담당수사관은 금품을 반환
- ⑦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**담당 공직자에게 수표 1,000만원을 우편으로 발송**, 담당 공직자는 금품을 반환
- ⑧ 공공의료기관 직원이 원내 복도에 서서 환자 보호자와 면담하던 중 **환자 보호자가 직원 주머니에 수표 500만원을 몰래 넣는 방법으로 제공**, 공공의료기관 직원은 금품을 반환
- ⑨ 이의신청 민원인이 퀵서비스를 통해 **업무담당 공직자에게 2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**, 담당 공직자는 금품을 반환
- ⑩ 사기사건 현장조사를 동행한 피의자가 **담당수사관 차량 내에 현금 100만원과 양주1병(10만원상당)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제공**, 담당수사관은 금품을 반환
- ⑪ 분쟁조정 사건 당사자가 **업무담당 직원에게 33,000원 상당의 한과 1 상자를 택배로 발송**, 담당 공직자는 한과를 반환
- ⑫ 심판 청구인 대리인이 **35,000원 상당의 와인을 업무 담당자에게 택배로 발송**

2. 직무관련 업체 등 직무관련자의 금품 등 제공

- ① 공공기관에 설치된 **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공공기관 출입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공직자의 사무실 내에서 10만원 상품권을 제공**, 담당 공직자는 현장에서 거절
☞ 제공자에 과태료 20만원

- ② 지방법원 관내 변호사가 식당에서 관할 법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함께 식사한 **식사대금 3만원 중 2만8천원을 판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신 지불**
- ☞ 제공자에 과태료 9만원
- ③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직원이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 직원들과 해당 **공사 감리자에게 같은 날 3회에 걸쳐 48만원 상당의 식사·주류 접대**
- ☞ 제공자에 과태료 150만원
- ※ 제공자 소속 법인 및 접대 수수 공직자는 관할 법원에서 사건 진행 중
- ④ 공공 공연장의 공직자 2인이 해당 공연장에서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한 공연의 기획사 대표로부터 **공연 전날에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수수**
- ☞ 제공자에 과태료 20만원, 제공자 소속 법인 과태료 20만
수수 공직자 2인에 과태료 각각 10만원
- ⑤ 문화재 관리대상 업체의 직원이 문화재 관리를 위해 업체를 방문한 **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**, 금품은 위반자에게 반환
- ☞ 제공자에 과태료 20만원
- ⑥ 공공기관 관계자가 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**후원을 빙자하여 지역 단체 등에 1,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·수수**
- ⑦ 교육 투자 사업자가 **학교 교원을 상대로** 투자 유치를 하면서 현지 방문을 위한 **3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**를 제공
- ⑧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**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**, 공사 감리자는 금품을 반환

- ⑨ 공공기관 토목직 직원이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하도급을 받은 **건설업체이사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**
- ⑩ 공공기관 경리계 직원 3명이 관련업체 직원으로부터 1차 식사 및 2차 주점, 3차 주점에서 각각 **28만원, 31만원, 60만원 상당의 접대 수수**
- ⑪ 직무관련자가 공공기관 직원에게 **24만원 상당의 연극 초대관람권 6매**가 동봉되어 있는 우편을 송부, 공직자는 초대권을 반환
- ⑫ 과거 계약업무 건으로 알게 된 업체 직원이 **11만원 상당의 뮤지컬 교환초대권 2매**를 공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, 공직자는 이를 반환
- ⑬ 공사감리자가 공공기관 공사설계 담당직원에게 **6만원 상당의 공연 초대권 4장**을 연하장에 동봉하여 송부, 공직자는 이를 반환
- ⑭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**5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수수**

3. 공직자 퇴임 선물, 상급 공직자에 대한 향응 제공

- ① 교수가 **후배교수 17명이 70만원씩 각출**하여 마련한 764만원 상당 골프채 세트를 퇴임기념 선물로 수수
- ② 과장이 **부서원 20명으로부터 5만원씩 각출**하여 마련한 98만원 상당 금열쇠 1개 등 100만원 상당 퇴직기념 선물을 수수
- ③ 부하직원이 상급자에게 **평가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며 31,600원의 향응을 제공**

4. 학부모학생의 금품 제공 사례

- ① 학교운동부 감독이 코치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**운동부 학부모들**에게 **800만원의 금품 제공을 요구**
- ② 교수가 대학원 과정 학생의 해외연수 동행시 **129만원 상당의 해외 연수 비용을 수수**

재단 행동강령 제22조[알선·청탁 등의 금지]

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 (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·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·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.

1. 인사청탁에 따른 직무수행

-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인사를 처리

2. 불출석 학생에 대한 출석·학점 인정 직무 수행

- 외국거주 대학원 과정 학생이 강의에 불출석했음에도 교수가 학점을 인정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

3. 진료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

-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이나 진료순서 대기 없이 진료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및 검사 수행

4. 공직자에게 시설 승인 부정청탁

- 공직자가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시설 완공승인 편의 및 위법사항 묵인을 하급자에게 지시

5. 공직자에게 검사 합격 부정청탁

- 물품 납품 회사 직원이 납품 검사 관련 심의위원에게 부정청탁